

●전국도서관대회 제2주제 발표

새도서관법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제문제와 개선방안

손 정 표

〈경북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I. 서언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들의 숙원이었던 도서관법과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이 1987년부터 1989년에 걸쳐 각각 전면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나라 도서관계도 이제 이들을 근거로 새로운 도약의장을 맞게 되었으며, 오늘의 대회도 곧 그러한 개정법을 바탕으로 도서관 육성을 위한 장기계획수립의 방향모색 등 발전의장을 마련하고자 한데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의 관계법규를 보면, 1987년에 개최된 제25회 전국도서관대회를 비롯하여 이미 수차례 걸쳐 그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나, 도서관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서직원 배치기준과 폐기기준 및 1988. 7. 27(대통령령 12497호)에 개정된 대학설치기준령 중 개정령에 건물면적 기준을 신설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신설된 건물 면적기준도 문제점을 안고 있어 비록 과거에 비해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하겠다. 이 뿐만이 아니라 현황을 보더라도 4년제 대학은 1987년 말까지 전문대학은 1983년 말까지 완비키로 되어 있는 법적기준에도 아직까지 미달된 도서관이 과반수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당면 문제중 우선순위를 든다면 무엇보다도 대학교육의 내실화 도모를 위한 가치지표설정이 선결과제라고 여겨져 이논고에서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수립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직원규모와 직제, 장서규모와 예산범위, 시설규모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 관계법규, 예규 및 지침서등과 관련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장서규모와 예산범위

1. 장서규모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무엇보다도 장서 개발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장서개발은 석·박사과정 유무, 봉사대상자 규모, 교과과정의 범위, 연구소 수와 연구활동, 교수방법등에 따라 그 개발범위와 규모도 달라진다 하겠다.

그러한 관점에서 먼저 법적기준을 살펴 보면, 4년제 대학은 「학생정원 1인당 30권 또는 학과당 5000권 중 많은 수 이상의 도서와 매년 학생정원 1인당 3권 이상」(대학설치기준령 12조 3호), 「학과별로 10종 이상(자연계 15종 이상)의 전문분야 정기 간행물」(동4호)을, 전문대학은 「학과당 500권 이상으로 하되 학생정원이 80인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1

인마다 5권씩」(전문대학설치 기준령 9조2항), 「학과마다 학술잡지 2종 이상」(동3항)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을 근거로 대학도서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은 1988년 3월말 현재 기본장서량은 학생 1인당 평균 26.3권(종합대 27.4권, 단과대 19.2권)으로, 기준도달교가 31.2%(종합대 30.2%, 단과대 32.4%), 연차 증가량은 학생 1인당 2.15권(종합대 2.18권, 단과대 1.99권)으로 기준도달교가 26.0%(종합대 20.9%, 단과대 32.4%), 정기간행물은 1개교당 평균 1,391종, 학생 1인당 0.16종(종합대 0.17종, 단과대 0.11종)으로 기준도달교가 81.8%(종합대 81.4%, 단과대 82.4%)로 나타나 완비 년도가 1987년 말까지인데도 도서의 경우는 아직까지 법적기준에도 상당히 미달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뿐만 아니라 1985년 현재 일본의 국립대학 학생 1인당 장서량 평균 133.8권, 연차증가량 4.9권 정기간행물 1개교당 평균 5,310종, 학생 1인당 1.12종, 미국의 50개 종합대학 학생 1인당 장서량 평균 163.8권, 연차증가량 5.0권, 정기간행물 1개교당 평균 39.442종, 학생 1인당 1.84종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전문대학의 경우도 학생 1인당 장서량은 평균 6.1권, 연차증가량은 학생 1인당 0.7권, 정기간행물은 1개교당 평균 38.5종, 학생 1인당 0.02 종으로 비록 법적 기준에는 대부분 도달하고 있으나, 1985년 현재 일본의 단기대학 학생 1인당 장서량 평균 32.2권 연차증가량 1.84권, 정기간행물 1개교당 평균 148.5 종, 학생 1인당 평균 0.15종과 비교하여 볼 때 역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준 자체도 대만이나 일본에서 제시한 중·고등학교의 최저기준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아울든 우리나라건 선진국이건 간에 대학구성원들이 교수·학습과정이나 연구과정에 필요로 하는 지식의 총량에는 그처럼 큰 격차가 내재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대학교육의 내실화 도모와 연구도서관으로서의 사명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보협력망 구축의 주도적 역할을 충분히 완수해 나가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장서개발범위의

확장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고, 4년제 대학중 기준미달교들은 8개국 19개 기준을 비교분석하여 본 결과 학부중심교육을 지향하는 대학이라면 1인당 기본 장서량 30권과 연차증가량 2권 정도로도 어느 정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짧은 기간 내에 현행 법적기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과에 석·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는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연구적 기능이 수행되려면 법적기준보다 많은 장서규모와 장서개발범위의 확장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톤(P. J Danton)이 제시한 장서개발 5단계중 2단계 수준인 석·박사과정 교수·학습지원 집서단계를 최소한 유지하여야 하므로 2000년대에 도래하게 될 정보산업화사회에 대비하여 적어도 학생 1인당 70~80권, 연차증가량 1인당 3권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2단계 목표로 10~15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기간행물 기준도 외국의 10개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본 결과 대체로 2,000~3,000종을 최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종합대 기준의 경우는 영국이 0.75종, 카나다가 0.56~1종, 독일이 0.96종 미국이 1985년 현재 50개교 실태분석결과 1.84종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적 기능 수행에 정기간행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재인식하여 대학설치 기준령 제12조 4호에 명시된 최저 기준을 이병복 교수의 권장기준(학생 1인당 0.2종)과 1988년 2월에 문교부의 개정 심의를 거친 바 있는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3조 별표1에 명시된 안처럼 상향조정하여 「학생정원 1인당 0.2종 또는 학과당 인문계 30종, 사회·자연계 50종, 가정·예체능계 20종, 의학계 200종중 많은 수 이상의 전문분야 정기간행물」로 개정하고, 대부분의 학과에 석·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는 이 기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연구활동지원을 위한 집서수준인 학생 1인당 0.5 종 이상을 2단계 목표로 설정하여 10~15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대학도서관계도 도서관법의 개정과 더불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

야 할 때라는 점을 상기하여 위에 제시한 목표달성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보협력망구축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학문분야별로 지정되어 있는 특성화 학과들을 우선순위로 하여 그 주제분야 도서관자료도 함께 특성화시켜 장서개발의 네째 단계인 망라적 집서단계를 지향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러한 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개정 도서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조성될 도서관 진흥기금의 적극적인 지원등 제반조치가 강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대학 기준의 경우도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하여 본 결과 기본장서량이 5.6권 정도 정기간행물이 학과당 2종인데 비하여 외국의 기준들은 기본장서량 1인당 20권내외(미국 20권, 대만 15권, 일본 20~25권), 정기간행물이 학과당 20~25종 내외를 최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역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차증 가량에 대한 기준도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2년제 대학이라 하더라도 4년제 과정과 개설 교과목의 다양성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교육방법과 교과내용이 많고 교수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장서개발 단계중 적어도 최저집서단계수준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도서관협회와 버튼(R.E. Burton)의 봉사부담량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3·4학년이 1·2학년보다 2배의 양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로 미루어 볼 때 「대학정원 1인당 15권 이상과 매년 학생정원 1인당 1권 이상의 도서와 학과당 10종 이상(자연계 15종 이상)의 정기간행물」을 최소한 갖추도록 전문대학설치 기준령 제9조 2항과 3항을 개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자료구입 예산범위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인적자원과 더불어 충분한 예산적 뒷받침이 없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의 질적 봉사를 기대하기 위하여는 유능한 사서의 확보와 더불어 충분한 자료구입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학 및 전문대학설치 기준령을 보면 이에 관한 조항이 명시

되어 있지 않고 국립대학 및 전문대학은 매년마다 조정되는 「국립교육기관 예산(안)조정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된 국고에 대한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와 기성회운영관리 지침에 근거하여(1988년도 도서비 예산액을 보면 국고는 학생정원수×2권×1권당 6,000원을 기성회비는 학생 1인당 10,000원 이상을 책정하도록 함). 사립대학은 1981년도에 문교부가 내놓은 「대학도서관운영개선방안」에 제시된 권장비율에 근거하여 대학 경상비의 3% 이상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을 근거로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 예산액 현황을 살펴 보면 1988년 3월말 현재 4년제 대학은 학생 1인당 평균 25,850원(종합대 26,990원, 단과대 20,620원)으로, 국립대가 평균 28,300원(종합대 36,520원, 단과대 25,480원), 사립대가 22,520(종합대 23,380원, 단과대 18,200원)이고, 이중 2만원이하 배정 대학이 전체의 36.8%(종합대 32.6%, 단과대 42.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학총예산액에 대한 자료구입비 배정비율은 대체로 국립대가 1.5%, 사립대가 1.3% 정도에 머물고 있는 한편, 전문대학은 학생 1인당 평균이 5,190원으로 나타나(대학총예산액에 대한 비율은 자료 미입수로 제외함), 이러한 실정하에서는 연차증가량 및 정기간행물의 법정기준조차 갖추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한 원인은 사립대의 경우는 상기 운영개선방안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행정적 구속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국립대의 경우도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품목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정치적 흥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면 필자가 한 논문에서 학교운영비의 등록금 의존도(국립종합대 56.22%, 사립종합대 77.95%, 국립단과대 26.09%, 사립단과대 73.44%)와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평균정가를 기초로 그 기준안을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총경상비(시설비, 병원경비 제외)에 대한 자료구입비를 4년제 대학의 경우는 최소한 4% 이상을, 전문대학은 교수-학습용 자료에 중점을 두어 장서구성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자료 의존도도 4년제 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1.5% 이상을 배정하도록 각 설치 기준령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나라 법체제상 예산을 법규상에 명시할 수 없다면, 국립대학의 경우 「'89년도 국립 교육기관 예산(안)조정기준」을 보면 「학생정원×2.5권×1권당 6,000원」을 책정하여 1988년도보다는 0.5권이 상향조정되기는 하였지만 학생 1인당 15,000원으로 낮게 배정되어 있으며, 1권당 단가도 물가상승율이 전혀 배려되지 않은채 5년전이나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가 하면, 전문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문교부가 시달한 「'89년도 국립대학(교) 기성회운영 관리지침」도 금년도부터는 기성회 예산의 도서비배정을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정치적 흥정의 도가 더욱 높아질 우려성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4년제 국립대학은 1991년까지 금년도 배정기준의 2배(학생정원×2.5권×1권당 12,000원)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토록 하고, 1992년부터는 지난 9년(1979~1987)동안의 도서가격지수 변동추세를 산출하여 본 결과 연 6%의 상승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매년 6%씩 상향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더불어 기성회 도서비 배정도 대학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상기한 국고예산조정 기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기성회 운영관리지침에 명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사립 4년제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도 상기한 대학경상비에 대한 비율 4%이상과 1.5% 이상을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닌 당위지침으로 명문화 하여 시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III. 직원규모와 직제

I. 직원규모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도서관의 질적 봉사는 전술한 장서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정보자료를 매체로 하여 교수·학습, 조사·연구간에 교량적 역할을 수행할 적정규모의 직원과 유능한 사서의 확보에 달려 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직원수에 대한 기준이 그동안 낮게 책정되어 있어 대학교육 내실화

의 저해요인 중의 하나가 되어 왔으나, 1988년 8월 16일 도서관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동령 제4조에 「당해 대학의 학생수가 1천인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4인을 두되, 그 학생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학생수 1천인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2만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만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고 개정하여 비록 구법시행령에서 안고 있던 비사서직원 배치기준 미설정에 대한 문제점은 완전히 해결해 놓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서직원의 경우는 그 배치기준을 상당히 상향조정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기준설정요소도 학생수만이 아니라 직원규모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장서규모까지 요소로 체택해 놓아 꼭 의의있는 기준설정을 하였다고 하겠다.

이 개정기준을 근거로 하여 대학도서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은 1988년 3월말 현재의 장서현황만을 기준으로 77개 대학을 분석하여 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사서직원 법정정원 총수 1,548명에 현인원이 1,187명(기준 도달율 76.7%)이나 개개대학별로는 기준 도달교가 전체의 14.3%(종합대 14.0%, 단과대 14.7%)이고, 설립자별로는 국립대(20개대)가 전체적으로는 법정정원 422명에 현인원 409명으로 기준 도달율이 96.9%(종합대 99.7%, 단과대 84.8%)이지만 개개 대학별로는 기준 도달교가 25%(종합대 30%, 단과대 20%)로 나타나고 있고,

사립대(57개대)는 법정정원 1,126명에 현인원 778명으로 기준 도달율이 69.1%(종합대 69.1%, 단과대 68.8%)로 개개 대학별로는 기준 도달교가 10.5%(종합대 9.1%, 단과대 12.5%)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대학(104개대)의 경우는 법정정원 총수 520명에 현인원 154명으로 기준도달율이 29.6%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서현황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장서기준을 근거로 산출하여 본다면 기준도달율은 이보다 훨씬 낮아진다 하겠다.

한편 사서직원 1인당 봉사대상 학생수를 보면, 4년제 대학이 평균 561.8명(종합대 540.6명, 단과대 685.9명), 전문대학이 1,733명이고, 한국적 실정을

고려한 전문사서라 할 수 있는 정사서 1인당의 경우는 4년제 대학이 819.2명(종합대 803.8명, 단과대 898.9명), 전문대학이 3655.4명으로 나타나, 4년제 대학의 경우 1985년 현재 미국의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사서 1인당 240명, 카나다 300명, 일본의 국립대학 직원 1인당 109명(임시직 포함), 사립대 206명(임시직 포함), 전문대학의 경우 미국의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사서 1인당 500~1,000명, 일본 단기대학 직원 1인당 264명(임시직 포함)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과중한 봉사부담량을 안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정사서 : 준사서 : 비사서직원의 구성비율도 4년제 대학이 39% : 18% : 43%(종합대 39% : 19% : 43% 단과대 41% : 13% : 46%), 전문대학이 23% : 26% : 51%로 나타나, 1984년도 보다는 상당히 향상되었지만(사립대의 정사서 : 기타직원 32% : 68%, 국립대 20% : 80%), 필자가 한 논문에서 모형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 최소 구성비율인 40% : 25% : 35%와 비교하여 보면 아직도 비사서직원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실정 속에서는 업무능률의 저조는 물론 질적봉사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이건 공히 짧은 기간 내에 개정도서관법시행령에 명시된 기준 이상의 사서직원을 확보하되, 법적으로 연차증가 10,000원당 최소한 사서직원 0.5명씩이 증치되어야 하므로 전술한 장서개발계획에 맞추어 사서직원 증원계획도 함께 수립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도서관업무란 전문직 업무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직 업무도 35~40%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비록 개정법에서도 구법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 행정직(사무직)을 포함한 일정 수의 비전문직자도 배치되어야 하므로 앞서 제시한 구성비율과 같이 법정사서직원수의 0.54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조직구조

“조직이란 단순한 챕트가 아니고 경영자가 그것을

통하여 기업을 지휘·조정·통제하는 기구”라고 한 피쉬(Fish)의 주장처럼 경영관리에 있어서 조직의 양부는 그 기업성과에 대한 관전이 될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조직구조에 관하여 먼저 법적기준을 살펴 보면, 국립대학의 경우 서울대는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7조1항에 「수서과, 정리과, 열람과, 참고서지과 및 규장각도서관리실」의 4과1실을, 기타 국립종합대는 국립학교설치령 제13조 1항에 「수서과, 정리과, 열람과」의 3과를 두도록 규정한 반면, 국립 단과대 및 전문대는 규모에 관계 없이 공히 직계편성을 명문화 하지 않고 있으며, 사립대학의 경우 종합대와 단과대는 학교법인정관(준칙) 제95조 1항과 제100조1항에 공히 「수서과, 열람과와 ()과」의 2과~3과를 전문대는 동준칙 제104조 1항에 「수서과, 열람과」의 2과를 두도록 하여 국·사립 기준을 비교하여 볼 때 불균형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러한 법적근거와 필자가 통솔범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전문직 업무대 비전문직 업무의 구성비율로부터 추정하여 한 논문에 제시한 바 있는 업무별 적정인원(수서업무 4~5명 정도, 정리업무 5~6명 정도, 참고·서지업무 3~4명 정도, 서무·관리업무 4~5명 정도(단 전물관리 15~30명), 홍보업무 3~4명 정도) 및 1과의 적정 하부조직 단위 수와 구성인원인 3~4계, 18~24명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조직구조의 현황을 살펴보면, 1988년 3월말 현재 서울대는 4과 1실, 기타 국립종합대는 3과를 두고 있고, 사립종합대는 37개 대학중 1과가 1개교, 2과가 23개교, 3과가 13개교로 나타나고 있고(이는 중앙도서관만의 조직규모이며, 단과대와 전문대는 자료 미입수로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단과대는 1~2과, 전문대는 1과 정도임), 이밖에 부관장급 중간관리계층을 두고 있는 대학은 국립종합대가 1개교, 사립종합대가 6개교로 나타나고 있다.(1989년 현재로는 국립대 1개교, 사립종합대 9개교임)

한편 이들의 직원규모를 보면, 서울대가 168명, 기타 국립종합대가 평균 55명, 1과를 둔 사립대가

16명, 2과를 둔 사립대가 평균 25명, 3과를 둔 사립대가 39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직원규모로 보았을 때 서울대는 1~2과 정도 증설이 요구 되지만 사립대의 경우는 통솔범위의 폭이 좁은 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체로 국·사립 공히 별문제가 없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는 법적기준에 미달된 상태에서의 조직규모이기 때문에 장서의 법적기준인 학생정원 1인당 30권, 연차증가량 1인당 3권 혹은 전술한 석·박사과정 교수 학습지원 접수단계인 1인당 70~80권, 연차증가량 1인당 3권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직원수가 요구되므로 조직구조의 확대가 불가피 할 뿐만 아니라, 장서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수도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사서직원 배치기준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기준도 법적 기준을 고려하여 수립해 좋은 조직구조 규모는 아니라 하겠다.

조직이란 업무종류와 직원규모, 업무내용의 복잡정도와 책임정도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진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연구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학생정원 1인당 연차증가량 3권의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장서규모가 법적 기본장서량의 2배로 증가함과 더불어 직원 규

모도 그에 따라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직규모도 그러한 법적기준에 맞게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정원 4,000~5,000명의 단과대는 2개과를 18,000명 내외의 종합대에는 적어도 5~6개과를 두도록 관계법령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0조1항과 국립학교설치령 제11조 4항에 국립4년제 및 전문대 도서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학교법인정관(준칙) 제94조 2항과 99조 2항에 사립 4년제 대학도서관장은 조교수 이상이, 제103조 2항에 전문대 도서관장은 전임강사 이상이 겸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도서관으로 하여금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대응해 나가는 한 동태적 기구로서의 역할은 물론 서기 2.000년대에 도래할 정보산업사회에 대처해 나갈 국가적 차원에서의 학술정보망 구축이 시급한 현시점에서 그 주도적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미래지향적으로나 개정도서관법시행령에 신설된 1급 정사서의 자격요건으로 볼 때 이제는 전문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전문직 전임관장제를 채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현행제도처럼 교수 겸직제도를 채택할 수 밖에 없다면 관

<표 1>

학생 및 장서규모에 따른 조직규모(안)

학생정원 (명)	장서수(권)		전체직원수(명)		조직규모(과)	
	30권기준	70권기준	30권기준	70권기준	30권기준	70권기준
2,000	60,000	140,000	11	17		(1)
3,000	90,000	210,000	15	24	(1)	1~2
5,000	150,000	350,000	23	39	(1)	2
8,000	240,000	560,000	34	59	2	3
10,000	300,000	700,000	41	72	2	3~4
13,000	390,000	910,000	54	94	3	4~5
15,000	450,000	1,050,000	62	108	3	5
18,000	540,000	1,260,000	73	128	3~4	6
20,000	600,000	1,400,000	80	142	4	6~7
23,000	690,000	1,610,000	92	163	4~5	7~8
25,000	750,000	1,750,000	100	177	5	8

※ ()안은 과단위보다 계수준 직계편성이 바람직함.

장의 교수직무와의 겸직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통솔의 폭이 좁아지므로 종합대에는 모두 전문직 전임부관장제를 두도록 하고, 전술한 전문직 전임부관장제를 채택할 경우에도 5과 이상으로 부문이 편성될 경우에는 통솔의 적정범위로 볼 때 전임부관장을 두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3. 직급

직급의 문제는 특히 국·공립도서관들이 오랜동안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제로, 이들의 현황을 살펴 보면, 사서직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행정직군 아래 사서직열로 편성하여 9급부터 4급사서관까지 6등급(지방공무원임용령은 5급사서관까지 5등급)으로 나누고, 서울대는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7조에서 도서관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 사서관으로, 규장각도서관리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하도록 한 반면, 기타 국립종합대는 국립학교설치령 제13조에서 수서과장은 행정사무관(5급), 정리·열람과장은 5급사서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직으로서의 직급한계가 사실상 5급까지로 한정지어진 느낌을 주고 있으며, 서울대의 경우도 설치령과는 달리 정원령에는 아직까지 서기관으로만 되어 있어 법체계상 불합리한 양상도 보여 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1989년 6월 17일자로 개정된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예규」를 보면 자격증지정 기준의 목적을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한 가격증이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두고 있으면서 동일행정직군 아래있는 행정직열의 변호사, 전산직열의 정보처리기술사는 경력요건없이 5급에 특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서직의 경우는 1급정사서 자격요건에 정보처리기술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1급정사서자격증 소지자는 6급, 1급정사서로 5년 실무경력자는 5급에 특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형평을 잃고 있으며, 박사학위소지자는 재직연수불요,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 학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상이면 연구관에 승진될 수 있도록 한 연구직 공무원보다도 1급정사서의 자격기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체용기준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의 시정이 시급히 요청

되고 있다.

또한 사립대학의 경우도 학교법인정관(준칙) 별표 2에 일반직계는 2급(참여)까지 배정한 반면, 사서직의 경우는 기술직계에 편성하여 4급(사서참사), 5급(사서부참사), 6급(사서), 7급(부사서), 8급(사서보), 9급(사서보)의 6등급으로 나누어 직급 한계를 4급까지로 국한하고 동 준칙 제95조(대학교), 제100조(대학), 제104조(전문대)에서 도서관의 수서과장은 일반직계 참사(4급),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교수임)으로 보하도록 하여 국립대보다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겠다. 이 밖에 관장의 경우도 전술한 바와 같이 국·사립대 모두 교수직에서 겸직토록 관계법령에 명문화 되어 있는가 하면, 부관장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가운데도 교수직에서 겸직하는 곳도 있어, 위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곧 대학도서관 발전의 저해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승진이란 동기유발의 요인이며 사회적 지위를 얻는 수단으로 보수와 더불어 사기형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사기요인이라 함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밝혀진 바 있다.

대학도서관의 업무란 책이나 대출하는 단순업무가 아니라 10년마다 3배의 비율로 증가하는 막대한 정보원을 조사 수집하여 분석·정리하고 미시적 정보에 이르기까지 각종 연구지원을 위한 정보의 분석 및 제공, 번역 및 가공, 정보검색의 신속화를 위한 각종 서지의 작성등과 같은 전통적인 업무 뿐만이 아니라, 특히 요즈음에는 정보의 대량전달을 위한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가 활발히 추진되어감에 따라 시스템분석 및 설계, 주제분석,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등의 업무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계속적인 연구와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복잡업무인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정확한 정책 및 계획수립과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경영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두뇌집약산업사회에 적합한 대학도서관의 정보봉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는 높은 자

격요건을 갖춘 1급정사서를 비롯한 유능한 사서들을 대학도서관에 유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유인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첫째, 직급의 경우 국립대 사서직 공무원은 직군을 일반 행정직군에서 독립시켜 2급까지 전문직(8등급)으로 하는 방안이나 연구직공무원으로 개칭하여 직급을 문현연구관, 문현연구사로 하고 문현연구관의 경우 직위에 따라 2급까지 배정하는 방안, 또는 이상적인 방안으로 70% 이상의 미국대학들이 전문사서에게 연구직 또는 교수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일정수의 1급정사서에게 교수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 독립직군으로 하자는 이유는 직군이란 서로 유사한 직열이 모여 이루어진 것인데 현행 행정직군에 속해 있는 타직열의 경우는 관리 및 기능 위주의 업무이지만 도서관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업무의 속성이 이들과 협력히 다를 뿐만 아니라, 전문적 지식과 기술 및 계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급까지 전문직을 주장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같이 대학도서관이 두뇌집약산업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는 과학적, 경제적인 관리운영과 정확한 정책 및 계획수립이 필요시되므로 관장까지 전문직으로 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립대학도서관의 경우도 현재 4급까지만 전문직으로 되어 있으나, 상기와 같은 이유로 전문직 전임관장제까지 고려한다면 준칙을 개정하여 2급까지 전문직으로 하여 8등급으로 나누거나 일정수의 1급정사서에게 교수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모색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둘째, 관장을 현행처럼 교수직으로 보할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종합대의 경우는 전문직 전임부관장제를 채택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직급은 국립대의 경우 3급사서관(연구직공무원제 채택시는 문현연구관 3급)으로, 사립대는 사서부참여(3급)로 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세째, 각 관장의 경우 국립대는 서울대만이 아니라 기타 국립대들도 그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4급사

서관(또는 문현연구관 4급)으로 보하도록 하고, 만약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립학교설치령 제9조와 10조에서 교무처 및 학생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동등하게 4급 또는 5급사서관(문현연구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도록 하고, 사립대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선택적 규정을 사서참사(4급)로 보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리고 수서과장의 경우도 국립대는 행정사무관, 사립대는 일반직계 참사(4급)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총무직 직능수행에 비중을 크게 둔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그러나 수서업무란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균형있는 장서개발을 통하여 봉사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하기 때문에 장단기장서개발계획 및 자료선택방침수립, 국내외 각종 서평지에 의한 신간자료 선정 및 구입, 각 주제분야 출판동향조사, 요구도분석, 복본량결정, 전문도서·특수도서·고문헌등의 선정 및 감정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라인부서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무·관리등과 같은 스텝직능을 독립시킬만한 업무량이 많지 않아 라인직무와 병존시켜 부문편성을 하였다면 이때의 부서장은 라인직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자가 선임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수서과장도 역시 4급사서관(또는 문현 연구관 4급), 사립대는 사서참사(4급)으로 보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 국립대의 경우는 봉사대상자 계층이 학부학생에서부터 교수에 이르기까지 높은 수준의 질적봉사를 요구하는 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전문사서의 유치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국립대의 경우 전체직원의 적어도 40%에 해당하는 전문직자는 전술한 바와같이 2급 이상의 정사서를 임용하여 7급 이상에 배치하도록 점진적으로 정원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사서직공무원 특별채용의 경우 1급정사서는 그 자격요건으로 볼 때 경력요건 없이 5급에 특채될 수 있도록 「공무원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예규」를 하루 빨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연구직 공무원으로 개칭 될 경우에는 1급정사서의 경우 문현연구관 5급으로 특체가 가능함)

여섯째, 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별표11의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를 보면 5급이상과 6급이하로 2구분하여 사서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이것도 역시 자격종별에 따라 차등지급되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하고, 사립대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V. 시설규모

I. 열람석수

열람석에 관한 기준은 직원공간기준, 장서수장공간기준과 더불어 대학도서관 공간기준설정에 3대기준요소라 할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시설규모결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열람석기준을 보면, 4년제 대학은 대학설치기준령 제12조1항 2호의 「…총학생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이라고 한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은 전문대학설치기준령 제9조 1항의 「학생정원 1할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열람실…」이라고 한 규정에 근거하여 갖추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을 근거로 대학도서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은 1988년 3월말 현재 전체 평균이 총학생정원의 23% (종합대 24.2%, 단과대 17.5%)로 법적기준을 15% 초과하고 있고, 개개 대학별로는 기준도달교가 71.4% (종합대 83.7%, 단과대 55.9%)로 나타나 46.3% 수준에 머물렀던 4년전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이 향상되었지만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법적기준 자체도 비록 외국기준(20~33%)에 비하여 낮지 않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어려운 가정학습환경을 고려하여 본다면 결코 높은 기준설정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법적기준을 이병목 교수가 바람직한 기준으로 제시한바 있는 25%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가능한 한 빠른 기간내에 바람직한 학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대학의 경우도 전체 평균이 11%로 법

정기준을 10%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정학습환경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는 물론 교수-학습과정도 4년제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적인 면에서의 자율학습분위기 조성에 대한 요구도에는 별차이가 없을 것으로 여겨져 총학생정원의 2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2. 공간규모

도서관의 내부공간구성은 이용자공간, 자료수장공간, 직원공간, 도서관의 목적 이외의 사용공간(nonassignable space)의 네부분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공간에 관한 법적기준을 먼저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아직까지 그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나, 4년제 대학은 대학설치기준령 제8조 3항 별표 2에 명시된 도서관시설 기준면적 산출기준인 「순사용면적(N)=0.73×총 학생 정원(T) m^2 +80m², 공유면적(복도·계단·관리실·창고·기계실·전기실·변소 등 부대시설)=0.65×순사용면적(N) m²」(학생 1인당 면적으로 환산하면 1.21~1.32m²)에 근거하여 갖추도록 하여 그동안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 이 이제 그 해결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다른 기준과 더불어 대학을 평가할 수 있는 가치지표를 새로이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준을 근거로 4년제 대학의 현황을 살펴보면 1988년 3월말 현재 학생 1인당 평균이 1.07m²(종합대 1.1m², 단과대 0.84m²)로 기준도달율이 87.0%이고, 개개 대학별로는 기준도달교가 36.4% (종합대 41.9%, 단과대 29.4%)로 나타나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기준 자체도 학생수만을 기준설정요소로 채택하고 있는가 하면, 국내대학도서관들의 현실태만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어 도서관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기에는 역시 문제점이 많다 하겠다. 도서관이란 그 성장이 항상 정지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랑가나단(S. R. Ranganathan)이 도서관학의 제5원칙에서 '도서

관은 성장하는 조직체'라고 주창한 바 처럼 비록 열람석수는 봉사대상자규모에 따라 한정성을 지니지만 이미 앞절에서도 살펴 본 바와같이 법적기준에 따라 매년마다 학생정원 1인당 3권씩을 갖출 경우 장서량은 매 10년마다 기본장서량 만큼씩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장서증가에 따라 직원수도 계속적인 증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자연히 시설규모도 이들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더욱 도서관신축이란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에반스(G.E. Evans)가 미국의 350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본 결과와 최초의 요구에서부터 완공까지 8.35년이 소요될 만큼 장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 적어도 20년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겠다.

따라서 바람직한 자율학습환경의 조성과 도서관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순면적(next basis)에 실내구조 및 비품배치손실율(configuration loss) 6%를 더 가산하여 요소단위별 공간을

산출하여 본 결과 필자가 한 논문에 제시한 바와같이 4년제 대학의 경우는 열람석 공간은 학생 1인당 $0.57m^2$ 직원 1인당 $9.8m^2$ 도서 110권당 $1m^2$ (개가제 포함), 정기간행물 최신간호 전시 1종당 $0.09m^2$, 각실의 부대공간 학생 1인당 $0.06m^2$, 도서관 목적 이외의 사용공간(로비·복도·계단·화장실·기계실·식당·창고등) 학생 1인당 최소 $1.8m^2$ 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을 참고하여 법적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리고 전문대학의 경우도 도서관목적 이외의 사용공간의 학생 1인당 최소 면적인 $1m^2$ 를 제외하고는 상기 수준의 범위에서 법적기준을 마련하여 전문대학설치기준령에 명문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도서관 목적 이외의 사용공간을 1인당 $1m^2$ 로 본 것은 전문대학의 경우는 4년제와 달리 대체로 도서관이 복합건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原稿募集

〈도서관문화〉誌는 600여 단체회원과 1,300여 개인회원의 대변자로서 보다 알차고 유익하게 꾸미고자 회원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내용 : 가)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학술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나) 도서관계의 국내외소식, 회원人事소식
다) 도서관과 관계되는 수필 또는 수기
라) 기타
2. 보내실 곳 : 137-04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산60-1
전화 : 535-4868 · 5616
3. 기타 : 가) 원고를 보내실 때 약력과 사진 1매 ("도서관문화"자료실 영구비치용)를 첨부바랍니다.
나)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稿料를 드립니다.

圖書館文化 편집실